

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유 용 기획경제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님!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
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윤기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김용연 의원 외 44명이 찬성한
「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」을 제안 설명할 수 있게
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먼저,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한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
출발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시민행복의 가치에 대한
진지한 고려와 반성 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
추진함으로써 헌법이 천명한 시민의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
훼손할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.

- 2012년 UN의 「세계행복보고서」 발표 이후, 사회발전과

공공정책의 목표가 경제성장 자체보다는 시민 행복 증진에 있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행복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행복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, 시민의 행복중심으로 서울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.

□ 다음은,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,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4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했습니다.

□ 또한 시민 행복 실태조사와 행복지수·행복격차지표 등 각종 행복관련 지표 개발·보급 및 측정·공표, ‘행복영향평가’와 ‘행복인지예산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정 계획이나

주요사업 추진 시에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, 재정운영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-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 기획경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감사합니다.